

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33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6월 02일
발 의 자: 유만희, 강석주, 김영옥,
김영철, 김종길, 김혜영,
민병주, 서상열, 송경택,
이상욱, 이효원, 최민규,
최유희, 홍국표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근거 신설(안 제4조)
- 나.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신설(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)
- 다.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근거 신설(안 제19조제3항)
- 라.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근거 신설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장애인복지법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

제8장(제19조 및 제20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

제19조(버스요금 지원)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서울시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 대상, 지원 한도,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정보의 수집 및 이용) ① 시장은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의 수집,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

정한다.

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의 수집, 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9조 (생략)

제21조 (현행 제19조와 같음)